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1회 제2차 정례회(2021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137
----------	--------

2021. 12. 8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한일용 의원 외 11명
- 나. 제 안 일 : 2021. 11. 19.
- 다. 회 부 일 : 2021. 11. 22.

### 2. 제안이유

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침입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에게 방범시설물을 설치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‘침입범죄’, ‘방범시설’ 용어 정의 추가 신설(안 제2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 활용 의무화  
(안 제5조)
- 다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신설(안 제8조)
- 라.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항 신설(안 제8조의2)
- 마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마포구청(관련부서)장 의견조회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1. 11. 19.~ 11. 24.(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이루고자 제안되었음.
- 안 제2조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‘침입범죄’, ‘방범시설’의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였고,
- 안 제8조는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의2 및 안 제9조에서는 범죄 취약계층에게 방범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’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
### 나. 종합의견

- 급속한 사회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<sup>1)</sup>가 높아지고 있음.

---

1) 2015년 대형마트 주차장 부녀자 납치살인(김일곤 사건), 2016년 강남역 문지마 살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증가

-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활동에서 사전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주민까지 요구되고 있음.
- 하지만, 현행 조례는 도시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,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범죄예방 환경혜택을 제공하기에 역부족한 면이 있었음.
- 이러한 제한적 사항을 지방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방법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